

여성친화적  
자전거 이용시설  
체크리스트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보관대(주차장)를  
중심으로-

손 문 금 (정책개발실 연구위원)

신 혜 숙 (교통기술사, 동림 P&D 이사)





# contents

I. 서론 .....	1
1. 체크리스트 개발 배경 및 목적 .....	3
2. 체크리스트 개발 과정 .....	4
II. 자전거이용과 성별관련성 .....	5
1. 접근성과 이동성 .....	7
2. 자전거이용환경의 안전성·편리성·쾌적성 .....	8
3. 자전거이용행태 .....	9
4. 여성의 참여 .....	10
III. 여성친화적 자전거도로 체크리스트 .....	11
1. 체크리스트 .....	13
2. 세부규정 .....	14
IV. 여성친화적 자전거보관대(주차장) 체크리스트 .....	23
1. 체크리스트 .....	25
2. 세부규정 .....	26



# I

서론



# I 서론

## 1. 체크리스트 개발 배경 및 목적<sup>1)</sup>

- 자전거이용활성화 계획은 서울시가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시교통본부 내 자전거교통담당관 조직을 신설하고 장기적인 자전거이용활성화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는 핵심정책임. 현재 시범단계에서 자전거도로 및 관련시설 건설 사업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이용에서의 성별관련성 요소를 확인하여 정책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파급효과가 큰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 본 연구는 누구에게나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이용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물론 여성과 남성의 입장에서 자전거이용시설과 관련하여 서로 다르게 인지될 수 있는 문제와 선호하는 개선안을 발견하여 여성과 남성이 형평하게 정책의 수혜를 받고 정책의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또한 여성친화적 자전거이용환경 구축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향후 자전거이용시설 구축사업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여성친화적 자전거이용시설이란 고령여성·청소년·아동·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전업주부 등 다양한 여성의 자전거이용 행동패턴과 감성까지 고려하여 계획·설계·시공·운영되어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리하며, 쾌적하게 만들어진 자전거이용시설을 말함.

---

1) 본 연구는 2009년 본 재단에서 수행한 '생활권 자전거친화타운조성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연구의 일부를 발췌한 것임. 따라서 자세한 사항은 연구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음.  
(<http://www.seoulwomen.or.kr>).

## 2. 체크리스트 개발 과정

### 1) 관련법률 및 통계자료의 수집·분석

-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서울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도로교통법,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등
-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인구주택총조사’ 등

### 2)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보관대(주차장) 이용환경의 성별 관련성 및 문제점 파악

- 자전거이용자 434명에 대한 정책만족도 및 요구도조사
- 송파구 및 노원구 자전거도로에 대한 현장조사
- 지하철역 주변 300대 이상 주차가 가능한 자전거보관대(주차장) 20개소 현장조사
- 서울시 및 자치구 자전거정책 담당공무원 Focus Group Interview
- 자전거이용시민여성 Focus Group Interview

### 3) 여성친화적 자전거이용시설 체크리스트 개발

- 교통기술사 및 여성정책 전문가 협의



# I

## 자전거이용과 성별관련성



## II 자전거이용과 성별관련성

### 1. 접근성과 이동성

- 자전거교통시설은 자가용 수단에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동할 수 있는 대중교통의 또 다른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 자체로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을 향상시킨다고 할 수 있음. 하지만 자전거관련 시설로의 접근성은 성별로 그들이 가진 사회적 역할과 경제적 지위에 의해서 크게 제약됨. 즉 여성은 경제활동참가율이 낮고 가사노동을 전담하고 있는 비율이 높을 뿐 아니라 특히 유아와 어린이를 동반하고 이동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거리 지역사회 내에서 특정 시설로의 자전거이동이 높음.
- 2009년 ‘자전거이용자 정책만족도 및 요구도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에 시행하고 있는 네 가지 차원의 자전거도로망 구축사업에 대해 여성의 경우 생활권단위 자전거도로 구축이 우선필요하다는 응답이 50.7%로 남성의 47.1%보다 약간 높음. 반면 남성은 한강과 한강지천의 자전거고속 도로망 구축이 우선필요하고 응답한 비율이 14.7%로 여성의 9.1%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임.
- 생활권단위에서 근거리 이동이 편리하도록 조성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망 및 자전거보관대(주차장) 구축사업에 대해서도 여성은 판매시설 연결이 우선 필요하다는 응답이 30.6%로 남성의 14.7%보다 월등히 높으며, 남성의 경우에는 대중교통 연계와 여가공간 연결이 우선 필요하다는 응답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음.

## 2. 자전거이용환경의 안전성 · 편리성 · 쾌적성

- 도시공간에서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범죄나 야간활동 등에 대하여 더 많은 두려움을 느낌. 여성들의 범죄에 대한 공포는 결국 사회활동의 제한으로 이어져 밤 시간에 자전거이용을 자제하거나, 동료들과 함께 다니거나, 자전거보다는 승용차를 이용하거나, 주차공간을 선별하여 주차하는 등의 행동을 하게 됨. 교통서비스의 편리하고 쾌적한 문제 또한 안전상 문제와 연계되어 여성들은 청결하고 따뜻하고 안락하며 안전한 차량 및 시설을 요구하는 비율이 높음.
- 자전거관련 시설물은 그 자체로 여성친화적 도로교통시설로 여성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으로 연결되지는 않음. 따라서 자전거관련 시설이 여성친화적 시설이 되기 위해서는 여성이 어떤 불편함을 가지고 있고, 이 시설들이 어떤 조건을 갖출 때 여성의 요구를 반영한 시설물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함.
- 2009년 ‘자전거이용자 정책만족도 및 요구도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은 남성보다도 자전거도로와 자전거보관대(주차장)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한 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반면 정책 요구도는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야간이용시 안전성 확대, 자전거도로 중 외진 곳에 안전을 위한 CCTV 설치 확대, 부드럽고 편안한 자전거 도로 색상, 자전거운행 중 위험상황 발생 시 도움요청을 위한 시설 설치 등에 대한 요구도가 남성과 많은 차이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여성은 안내표지와 노면상태, 도로연결턱과 같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으며, 신체적 조건 때문에 경사도에도 민감하였음.
- 자전거보관대(주차장) 시설에 대해서도 이용방법이나 자전거출입을 유도하는 바닥 등의 안내표지, 보행통로 확보, 안전한 바닥재료, 주차공간의 조도 및 야간조명, 주차공간의 개방감 또는 시야확보, 자전거수리 및 정

비서비스 운영 등에 대해서는 여성의 요구도가 높음. 반면 중·장거리 이동자(출퇴근자 등)를 위한 자전거주차장 내 샤워장 설치에 대해서는 남성보다 요구도가 낮게 나타났음.

### 3. 자전거이용행태

- 도로교통시설물은 독립적인 시설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개개인의 일상생활이 가지는 경험의 차이와 역할의 차이,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라 자전거이용행태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
-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자전거로 통근·통학하는 44,345명중 여성은 7,213명으로 여성이 16.3%에 불과함. 또한 연령별 자전거이용률에서 남성의 경우 10대의 자전거 이용률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월등히 높은 데 비해 여성은 10대의 자전거 이용률이 가장 저조하고 오히려 30대와 40대의 자전거이용률이 높았음.
- '서울시 단거리 승용차 통행감축방안 연구'에 따르면 서울시 자전거이동의 92.5%는 5km 이내에서 이루어지며, 서울시민의 81.62%가 통근·통학 시 자전거를 30분미만으로 이용하고 있었음.
- 2009년 '자전거이용자 정책만족도 및 요구도조사' 결과에서 여성들은 남성보다 자전거이용 1회 주행거리가 더 짧고, 자전거를 이용한다고 할지라도 여성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횟수가 남성보다 적었음. 자전거를 이용하는 목적으로 남성은 출퇴근을 위해 이용한다는 응답이 높고, 여성은 장보러 갈 때, 은행 관공서 등 가까운 공공장소를 방문할 때 이용한다는 응답이 남성보다 높았음. 또한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된 이유도 남성은 건강에 좋아서 자전거를 이용한다는 응답비율이 높지만 여성은 목적지 바로 앞까지 갈 수 있어서, 요금부담이 없어서 이용한다는 응답이 남성

보다 높았음.

- 자전거이용행태는 성별뿐만 아니라 연령과 혼인상태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임. 즉 연령별로 보면 10대는 학교나 학원 등의 등하교를 위해 매일 3km 미만의 거리로 이용하며, 시간적으로 빠르기 때문에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는 비율이 높음. 반면 20대 이상은 한주 2~3회 이상 이용하는 비율이 높고, 건강에 좋아서 자전거를 이용한다는 응답비율이 높음.
- 혼인상태별로는 유배우자의 경우 남성과 여성 모두 건강이나 취미, 여가 생활을 위해 자전거를 이용한다는 응답이 비혼자보다 높음. 하지만 같은 유배우자라 할지라도 여성은 남성보다 장보러가거나 가까운 공공장소를 방문할 때 자전거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남성은 출퇴근을 위해 자전거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음.
- 서울시의 경우 2001년 이후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건수, 사망자 수, 부상자 수의 전년대비 증가비율이 전국의 증가비율보다 높음. 특히, 여성 부상자수의 증가비율이 높음.

#### 4. 여성의 참여

- 여성친화적인 자전거이용환경을 구축한다는 것은 사업의 기획과 집행과정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그들의 관심과 요구, 경험을 고르게 반영하는 과정을 포함함.
- 2009년 ‘자전거이용자 정책만족도 및 요구도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은 여성친화적 자전거이용시설 조성에 대한 찬성률이 83.7%로 남성의 76.4%보다 높고, 여성친화적 자전거이용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남성 모두 제도보다는 여성이나 아동, 노인의 관점을 정책과정에 적극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III

여성친화적 자전거도로  
체크리스트





# III 여성친화적 자전거도로 체크리스트

## 1. 체크리스트

성별 관련성 요소	체크리스트	여성 친화성*
1. 접근성 이동성	1. 자전거전용도로 확보	권고
	2. 교통정온화 계획	필수
	3.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 공공시설, 교육시설 등)과의 자전거도로 확보	필수
2. 안전	1. 충분한 자전거 도로폭 확보	권고
	2. 자전거도로 충분한 회전반경 확보	권고
	3. 야간조명의 확보	필수
	4. 범죄예방 시설 설치	필수
	5. 위험 상황시 대응 안내표지	필수
	6.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자전거도로 확보	필수
	7. 속도조절, 주변상황, 자전거도로에 대한 안내표지	권고
3. 편리	1. 도로연결턱, 횡단보도턱 제거	권고
	2. 육교, 지하도, 계단 연결	권고
	3. 자전거도로 주변 자전거서비스 시설 (수리, 정비, 대여, 보관, 공기주입기 등) 설치	권고
	4. 자전거도로 주변 휴식 및 편의시설 (벤치, 그늘, 화장실 등) 설치	권고
	5. 맨홀 및 점검구 등의 미설치 또는 마감처리	권고
	6. 자전거 교육시설 공원 조성	필수
	7. 자전거이용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필수
4. 여성의 참여	1. 여성참여방안 마련	필수

\* 여성친화성의 '필수'는 자전거이용환경 구축과정에서 여성들이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이며, '권고'는 자전거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요소임.

## 2. 세부규정

### 1.1 자전거전용도로 확보(접근성 · 이동성)

여성친화성  
권 고

- 도입배경
  - 근거리 교통으로 자전거 이용이 빈번한 곳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고, 보행자와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 전용도로의 확보가 바람직함
- 목표
  - 여성의 자전거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여성 자전거 이용자의 주요 활동구간에 대한 집중적인 자전거도로 정비추진
- 규정
  - 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 · 시설기준에관한규칙 [시행 2006.6.1]에 설계속도 및 폭원 등 기하구조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설치장소 등 지침은 제시하고 있지 않아 지자체별로 각각의 설치기준을 정하여 운영중임
  - 차량 또는 보행자와 완전 분리한 전용도로의 설치. 차로의 폭원이 충분할 경우 도로다이어트를 통해 차도 내에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 보도 상에 설치할 경우 차도 측으로 설치하여 정지시거를 확보, 안전성 향상
  - 용도별(레저, 통근·통학, 테마, 쇼핑 등) 자전거전용도로 축 설정
  - 자전거전용도로 설치 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실질적인 수요가 있는 곳에 자전거도로 설치

### 1.2 교통정온화 계획(접근성 · 이동성)

여성친화성  
필 수

- 도입배경
  - 생활권내 자전거도로망의 설치·정비는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임. 따라서 생활권내 교통정온화 계획을 통해 보행자, 자전거이용자를 위한 우선도로선정과 차량의 주행, 주·정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간의 선정 및 개선이 필요함
- 목표
  - 자전거이용자가 실제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생활권내 자전거도로망 구축을 통해 여성 자전거이용자뿐 만 아니라 전반적인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함
- 규정
  - 주거지역, 상업지역, 업무지역, 혼합지역 등 지역 특성에 맞는 교통정온화 계획 강구
  - 각 생활권내 자동차중심도로, 보행·자전거중심도로를 선정하여 그에 맞는 도로로 개선
  - 보행·자전거도로의 선정은 주거지와 판매시설, 공공시설, 교육시설 등을 가장 짧은 거리로 직접 연계하는 가로구간을 설정하여 자동차와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강구
  - 생활권 이면도로 자동차의 30km 속도제한 규정 의무화

1.3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 공공시설, 교육시설 등)과의  
자전거도로 확보(접근성·이동성)

여성친화성  
필수

- 도입배경
  - 서울시 자전거 이동의 92.5%가 5km이내의 생활권 자전거도로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서울시민의 81.62%가 통근·통학 시 자전거를 30분 미만으로 이용하고 있음
- 목표
  - 생활권내 공공시설, 판매시설, 교육시설(학교, 유치원 등)과 주거지를 연결하는 자전거도로를 정비, 설치함으로써 현재의 잠재 자전거이용수요를 활성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함
- 규정
  - 생활권내 공공시설, 판매시설, 교육시설과 주거지를 연결하는 자전거도로를 설치
    -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 제95조, 제103조에 학교, 공공청사 및 도서관 결정기준에 자전거전용도로 연계기준을 명시하고 있음
  - 이 경우 자전거전용도로만의 설치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교통정온화 계획과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임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정온화 등과 연계한 Community 자전거 도로 도입
  - 지자체 학교 등과 협력, 자전거 통학 등 캠페인 추진

2.1 충분한 자전거 도로폭 확보(안전)

여성친화성  
권고

- 도입배경
  - 자전거 도로폭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방해요소와 부딪치거나 방해요소를 회피하다가 주변 도로시설물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됨
- 목표
  - 자전거 이용자가 주행중 방해요소와 만날 경우 이를 피해 주행할 수 있는 충분한 자전거 도로폭원이 확보되어야 함
  - 도로의 여건상 충분한 자전거도로폭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일정 구간마다 차를 설치하여 자전거이용자간 상충방지 및 타 방해요소와의 상충 최소화, 대피공간으로 활용
- 규정
  - 최소한 법적 규정인 일방시 1.1m, 양방시 2.0m의 자전거도로폭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함. (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 권장 규정으로는 일방 1.5m, 양방 2.5m 이상 확보.
  - 도로 시설물 및 불법적치물 등 폭원 확보 저해 요인의 제거
  - 통행량, 기하구조(경사도, 회전반경) 등을 고려한 자전거도로별 위계를 정하여 등급별 설계 속도를 고려, 적정(권장)폭원을 확보
  - 양방통행, 일방통행 여부에 따른 차별화된 폭원 확보
  - 적정폭원 미확보시 일정간격의 '차'를 설치하여 효용 및 안전성 확보. 차이라 함은 일방통행 자전거 도로일 경우 대향방향 자전거가 접근할 때 안전하게 피해 줄 수 있는 일정공간의 할애를 뜻함

## 2.2 자전거도로 충분한 회전반경 확보(안전)

여성친화성

권 고

- 도입배경
  - 충분한 자전거도로의 회전반경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자전거이용 시 자주 내리게 되어 자전거이용 상의 불편을 초래
- 목표
  - 회전 시 충분한 회전반경을 확보하여 내리거나 당황하지 않고 편안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규정
  - 자전거 도로의 경우 자전거 이용시설 기준에 곡선반경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도로가 연결되는 지점의 경우 회전이 불가하게 직각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음. 설계 시 연결지점에 대한 회전을 반드시 고려
  - 시설기준(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 자전거 전용도로 : 설계속도 30km/h, 최소평면곡선반경 24m이상 확보
    -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 설계속도 20km/h, 최소평면곡선반경 17m이상 확보
    -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 : 설계속도 20km/h, 최소평면곡선반경 10m이상 확보

## 2.3 야간조명의 확보(안전)

여성친화성

필 수

- 도입배경
  - 야간에는 자전거 도로상에 충분한 조명이 되지 않아 장애물을 미리 인지하지 못하여 사고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특히 외진 자전거도로 및 레저 자전거도로(강변, 하천변, 공원 내)의 경우 야간에 이용 시 충분한 조명이 되지 않을 경우 범죄에 노출될 수 있음
- 목표
  - 사람의 통행이 빈발하지 않은 외진 곳이나, 조도가 낮거나 조명 설치가 안된 지점에 충분한 밝기의 야간조명을 설치하여 여러 가지 사고 위험으로부터 여성 자전거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자전거도로 조성을 통해 여성의 자전거이용 활성화 유도
- 규정
  - 자전거도로 상 일정 수준 이상 조도 확보 필요
    - 기준 조도의 선정
    - 자전거도로 상 안내표지 판독가능여부 등을 고려한 조명 설치
    - 자전거 운전자의 눈부심 방지를 고려한 조명 설치 여부
    - 조명 필수 설치간격 확보
  - 표준 공공자전거 등에 전방 조명등화 설치토록 규정
  - 에너지 절감을 위한 저전력 조명시설 설치 여부, 재생에너지 등 기술 활용 전력 절감
  - 범죄의 위험 및 시거가 좋지 않아 사고의 위험이 있는 가로등 미설치 구간 내 조명설치
  - 터널, 고가하부 등 어두운 자전거도로 구간에 대한 조명 시설 확충

## 2.4 범죄예방 시설 설치(안전)

여성친화성

필수

### ■ 도입배경

- 친화타운 내 일반 자전거도로와 강변·하천변·공원 내에 설치된 자전거도로와의 연결 구간 및 사람의 통행이 빈번하지 않은 외진 곳에 위치한 자전거도로의 경우 범죄의 위험에 노출되기 쉬우므로 CCTV 등 범죄예방 시설 설치를 통한 효과적인 관리 감독이 요구됨

### ■ 목표

-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곳이나 사람의 통행이 빈번하지 않아 사고 시 도움요청이 쉽지 않은 구간에 대해 CCTV 등 방범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 환경 구축

### ■ 규정

- 강변, 하천변, 공원 내 범죄 발생 우려지역에 대해 CCTV 등 주요 방범시설 설치
- 사고 위험 노출 시 주변에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지점에 비상전화(HotLine), 비상버튼 등 응급 통신체계 설치
- 상시 감시 및 위험상황 발생 시 방범센터 등 대응시스템이 적정 연계 되어야 함
- 설치된 시설물의 정기적인 보수, 유사시 신속한 유지보수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안전 감시 체계 구축

## 2.5 위험 상황 시 대응 안내표지(안전)

여성친화성

필수

### ■ 도입배경

- 여성은 범죄피해에 불안감이 남성에 비해 높고 불안감은 사회활동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사고 및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 또한 더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 노출 즉시 도움을 청하거나 예방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 목표

- 사고 및 위험 상황 노출 시 즉시 도움을 청하거나 예방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대응 안내표지를 일정 구간마다 설치하여 여성과 어린이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

### ■ 규정

- 일정구간(약 2km)마다 위험 상황 시 대처방법 및 도움 요청 전화번호 등을 직시한 안내표지판을 설치
  - 안내표지판에는 신고지점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위치정보를 표기
  - 전도사고 등 자전거 운전자의 부상 시 상비약, 응급구호 키트(kit) 등 비치

2.6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자전거도로 확보(안전)

여성친화성  
필수

- 도입배경
  - 주5일 근무이후 주말을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선호하는 가족의 여가 활동 중의 하나가 자전거이용이라 할 수 있음. 특히 강변, 하천변의 경우 가족단위 자전거 이용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자전거도로의 설치는 잘 되어 있으나 이곳까지의 연결통로, 휴식처, 편의시설 등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목표
  - 가족단위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통한 미래 자전거이용 잠재수요 확장.
- 규정
  - 레저 자전거도로로의 접근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접근 통로 확대 설치(1km구간마다)
  - 레저 자전거도로 구간 내 휴식공간 확보 및 쉼터점 설치(2km마다 설치)
  - 공원, 하천변의 경우 자전거, 보행, 인라인이용자를 구분하는 자전거도로 설치
  - 주거밀집지역 가까운 장소에 가족자전거공원 설치
  - 가족이 함께 자전거를 타고 배울 수 있는 수단 및 프로그램 제공

2.7 속도조절, 주변상황, 자전거도로에 대한 안내표지(안전)

여성친화성  
권고

- 도입배경
  - 자전거 이용 시 사고는 주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게 됨. 즉, 갑자기 나타나는 급경사, 구조적으로 혼잡스러운 주변상황, 잘 인지되지 않는 자전거도로 등으로 인해 자전거이용자는 순간 판단을 어렵게 하여 주저하는 순간 사고가 발생하게 됨.
  - 이러한 예측불가 상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미리 자전거이용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줌으로써 사고의 위험을 최소화 하고자 함
- 목표
  - 위험한 곳, 주변 상황, 자전거도로의 연계 노선 등 자전거이용 시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를 자전거이용자에게 미리 알려주어 사고의 위험을 차단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이용을 유도
- 규정
  - 위험한 곳에 대해 정보 제공 : 200m에서부터 제공
    - 급경사, 차량과의 상충 요소 발생, 보행자와의 상충 요소 발생 등
  - 주변 상황에 대한 정보 제공 : 전방 200m에서부터 제공
    - 자전거도로 폭원 변화, 노점상 상시 점유 구간 등
  - 자전거도로 안내 정보 표지 : 5km마다 제공
    - 블록 내 자전거도로망, 자전거도로 노선의 분리 지점 등
  - 안내표지 설치 높이
    - 자전거운전자가 주행 중 안내표지를 확인가능하도록 높이를 고려
  - 야간 인지도 확보
    - 야간에 쉽게 인지 가능하도록 형광, 자체 발광, 주변 가로등 및 조명시설에 대해 반사광이 충분한 재질 사용

### 3.1 도로연결턱, 횡단보도턱 제거(편리)

여성친화성

권 고

#### ■ 도입배경

- 그 동안의 노력으로 자전거도로 연결구간에서의 도로연결턱은 어느 정도 제거가 되어 자전거이용자에게 편리성을 제공하고 있으나, 아직 일부 구간에서는 도로연결턱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거나 연결턱을 제거하더라도 그 면이 부드럽게 처리되지 않아 자전거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특히, 자전거횡단시설의 경우 기존 보행자 횡단보도 옆에 단순히 마킹만 하고 턱을 제거하지 않아 자전거이용자들이 보행자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함

#### ■ 목표

- 자전거도로 연결지점의 연결턱 및 자전거 횡단도내 보도턱을 제거함으로써 자전거이용자의 편리성 도모

#### ■ 규정

- 자전거도로 연결지점의 연결턱 제거 : 기존 바닥면과 일치시켜 자전거이용시 편리, 쾌적성 향상
- 자전거 횡단도내 보도턱 제거 : 자전거 횡단도내 보도턱을 제거하여 보행자와 자전거이용자간 상충을 방지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편리, 쾌적성 향상
  - 최소 5cm 미만으로 턱 조성
- 자전거도로의 정비 마무리 여부, 이면도로 연결부 등의 경사도 등에 대한 배려 여부
- 자전거 전복사고와 직결될 수 있으므로 횡단보도, 진출입부 안전표시 등과 연계

### 3.2 육교, 지하도, 계단 연결(편리)

여성친화성

권 고

#### ■ 도입배경

- 육교, 지하도, 계단 등에서 여성, 노인, 어린이 등의 자전거이용자는 자전거의 이동이 거의 불가능함.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자전거도로상의 육교, 지하도, 계단 등에 이동통로를 만들어 신체적으로 약한 자전거이용자도 어렵지 않게 자전거를 이동시킬 수 있어야 할 것임.

#### ■ 목표

- 자전거이용자의 편리한 자전거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자전거도로 연결 시 육교, 지하도, 계단 등에서 자전거를 끌고 이동할 수 있도록 연결 통행로를 설치

#### ■ 규정

- 자전거 설치 규정 : 자전거 경사로폭 15cm, 높이 3m 이상일 경우 3m 마다 1.2m 이상 평면 구간 확보(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3.3 자전거도로 주변 자전거서비스 시설  
(수리, 정비, 대여, 보관, 공기주입기 등) 설치(편리)**

여성친화성  
**권 고**

- 도입배경
  - 자전거이용 시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자전거를 끌고 사설 자전거정비소까지 가야하며 그 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먼 곳에 위치해 있는 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자전거이용자가 많은 불편을 겪는 것이 사실임. 또한, 주말 가족이 함께 자전거를 이용할 경우 가족수에 맞게 자전거를 모두 구매할 수 없는 현실(경제적 문제, 집에서의 보관 문제, 효율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자전거대여소의 확대 설치가 요구됨
- 목표
  - 자전거 친화타운 내 적절한 지점, 적절한 간격에 자전거서비스 시설을 설치하여 자전거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함으로써 자전거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잠재 이용자의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함
- 규정
  - 자전거 수리 및 정비소 : 기본적으로 자전거 주차장에 설치, 레저자전거도로의 경우 5km지점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물색하여 설치
  - 자전거 보관소 : 공공시설, 판매시설, 교육시설, 중요 대중교통 역, 정류소에 설치
  - 자전거 대여점 : 생활권내 1개소 이상씩 설치(반경 2.0km내에 단계별로 확대 설치하여 모든 생활권내에서 자전거를 대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자전거 휴식공간과 연계된 자전거 수리공간 및 수리 kit 배치
  - 이동식 자전거 수리 자전거 등 신속한 정비, 자전거 보관소에서 정기 자전거 점검 서비스 등 아이디어 도입

**3.4 자전거도로 주변 휴식 및 편의시설  
(벤치, 그늘, 화장실 등) 설치(편리)**

여성친화성  
**권 고**

- 도입배경
  - 여성 자전거이용자의 경우 주말 레저 자전거이용이 41.6%를 차지하고 있음. 주말 레저 자전거이용자의 경우 장시간, 장거리 이용이 대부분으로 이에 따른 휴식 및 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요함
- 목표
  - 장거리, 장시간 자전거이용자를 위해 일정구간(5km)내에 휴식 및 편의시설의 설치를 통해 자전거이용자의 편의를 도모
- 규정
  - 레저 자전거도로 : 5km마다 휴식 및 편의시설 설치 필요
  - 생활자전거도로 : 생활자전거도로의 경우 그 범위가 생활권내에 입지하고 있음. 따라서 목적지인 공공시설, 판매시설, 교육시설, 공원 등에 자전거 휴식 및 편의시설의 설치가 요구됨.
  - 자전거 휴게시설의 필수 설치 시설물의 정의, 자전거 거치대, 경정비용 수리 kit, 음수대 등 구비여부



3.5 맨홀 및 점검구 등의 미설치 또는 마감처리(편리)

여성친화성  
권 고

- 도입배경
  - 자전거도로의 연결턱과 마찬가지로 맨홀 및 점검구가 자전거도로내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 이를 지날 때 자전거이용자는 불편감을 느낄 수 있음. 따라서 자전거도로 설치 시 이를 고려하여 이러한 시설물을 자전거도로 밖에 설치하거나 어쩔 수 없이 설치할 경우 자전거도로와 같은 재질로 상부를 덮씌워 운행 시 불편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목표
  - 편리한 자전거 도로 이용을 위해 가급적 노면마찰이 적도록 시설을 설치하여 쾌적하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함
- 규정
  - 가급적 지장물이 자전거도로상에 위치하지 않도록 함
  - 불가피한 경우에는 상부를 노면의 재질과 같은 재질로 마감하고 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 시공 후 노면 재질의 상시 유지보수 체계 구비
  - 노상시설물 등의 통합관리를 위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 자전거 승차감, 포장의 내구성 등을 감안한 첨단 포장재질 적극 도입.
  - 맨홀 등 요철있는 부분을 일체형 재질로 처리, 사고위험 감소

3.6 자전거 교육시설 공원 조성(편리)

여성친화성  
필 수

- 도입배경
  - 자전거 이용활성화의 전제 조건은 자전거 이용자가 많아져야 함에도 막상 자전거 타는 방법을 모르는 잠재 이용자들은 자전거를 배울만한 마땅한 장소가 없어 고민하는 경우가 있음. 자전거를 배울 수 있는 별도의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여성 잠재 자전거 수요자를 이용자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목표
  - 자전거 이용자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별도의 자전거 이용방법을 익힐수 있는 교육공원을 조성하여 잠재된 자전거 이용수요자를 이용자로 변화시키고자 함
- 규정
  - 별도의 자전거 공원을 조성하여 전문화된 배움의 공간 마련
    - 기존 공원의 일부 공간을 활용하여 배움의 공간을 마련하거나, 자전거 임대 광장 등을 통한 교육프로그램의 추진
    - 시설뿐 아니라 교육자 공급계획이 필요하며, 자전거 이용 지침 등 안전 및 편리한 사용을 위한 매뉴얼 등 사전 구비

### 3.7 자전거 이용에 대한 교육 및 홍보(편리)

여성친화성

필수

#### ■ 도입배경

- 자전거 이용 시 자전거도로 이용방법, 자전거횡단방법, 도로에서의 우선순위 등 자전거이용 시 알아야 할 기본 사항을 교육하고 사고 시 대응방법, 기타 보험, 관련법에 대한 교육을 통해 자전거 이용의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 자전거이용자를 위한 별도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 서울시의 자전거교통사고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 수의 전년대비 증가비율이 전국보다 높고, 특히 여성의 증가비율이 높음(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

#### ■ 목표

- 바른 자전거 이용 방법을 숙지하여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고, 사고 시 대처능력을 배양시켜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이용을 도모

#### ■ 규정

- 자전거 이용방법 및 기본적인 관련법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자전거 도로망, 이용방법 등을 포함한 홍보책자 발행 및 배포
- 반상회, 주민자치센터, 학교 등을 통한 배포

### 4.1 여성참여방안 마련(여성의 참여)

여성친화성

필수

#### ■ 도입배경

- 자전거이용활성화 계획에 여성의 관점을 반영하고 여성이 참여할 수 방안 마련.
- 생활권 내 자전거 주요 동선을 선정하고 보행자 및 자전거이용자 중심의 커뮤니티 이동환경 조성

#### ■ 목표

- 생활권 내에서 여성의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로의 자전거도로 건설 및 자전거관련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수요파악
- 자전거관련 이용환경에 대한 모니터링 과정을 통한 불편, 불안, 불쾌 요인의 지속적 개선을 통한 시민만족도 향상

#### ■ 주안점

- 자전거 이용자 및 비이용자의 자전거이용수요, 이용목적, 이용용도, 이용시간, 이동경로 등에 대한 파악
- 자전거 도로망, 주차장 등의 이용시설 관리방안 필요성에 대한 주민동의과정 마련
- 자발적인 커뮤니티 내 자원봉사 또는 동호회활동 활성화 지원,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일자리 개발

# IV

여성친화적 자전거보관대(주차장)  
체크리스트



# IV 여성친화적 자전거보관대(주차장) 체크리스트

## 1. 체크리스트

성별 관련성 요소	체크리스트	여성 친화성*
1. 접근성 이동성	1. 공공시설, 판매시설, 교육시설, 공동주택 자전거 보관(주차)시설 설치	필수
	2. 대중교통과 연계된 자전거 보관대(주차장) 설치	필수
2. 안전	1. 방법 및 경보시설 설치	필수
	2. 조명 및 밝기	필수
	3. 위험상황 시 대응 안내표지	필수
	4. (건물식) 투명벽면 확보 및 시야확보(개방감)	필수
3. 편리	1. 여성우선 보관면 설치(건물식, 일렬식 20m이상, 복층식)	권고
	2. 이용방법에 대한 안내표지	권고
	3. 보행 및 자전거진출입 통로 확보	권고
	4. 공기주입기 설치	권고
4. 쾌적	1. 보관대(주차장) 내외부 쓰레기 및 적치물 관리	필수
	2. 날씨변화에 안전한 눈비가림막 설치	권고

\* 여성친화성의 '필수'는 자전거이용환경 구축과정에서 여성들이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이며, '권고'는 자전거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요소임.

## 2. 세부규정

### 1.1 공공시설, 판매시설, 교육시설, 공동주택 자전거 보관(주차)시설 설치(접근성·이동성)

여성친화성  
필수

- 도입배경
  - 여성 자전거이용자가 주말을 제외한 평상시 자전거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로는 판매시설, 공공시설, 교육시설로 나타남.
  - 그러나, 이러한 시설물의 경우 공공대중교통시설에 비해 자전거보관대(주차장)의 설치가 미비하여 여성 자전거이용자의 이용에 불편을 줄뿐 아니라 자전거이용 자체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목표
  - 여성들이 자전거이용을 많이 하는 시설물에 대해 자전거보관대(주차장)를 설치하여 잠재 여성자전거이용자를 활성화 시키고 기존 자전거이용자의 편의를 도모
- 규정
  - 공공시설 : 동사무소, 여성회관, 구청 등에 일정규모의 자전거보관대 설치
  - 판매시설 : 대규모 할인 마트, 생활권내 입지한 대형 슈퍼 등에 자전거보관대 설치
  - 교육시설 : 중학교, 고등학교 등 여학교 내 자전거보관대 설치
  - 기타 다중시설 : 은행, 휘트니스 클럽, 대규모 음식점 등
    - 여성이용자가 많은 시설의 자전거 보관대 위치는 외부에 노출된 지점으로 설치
  - 이러한 시설에서 여성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실시함이 바람직함. 즉 비탄소배출 교통수단자에게 판매시설의 경우 일정 금액을 할인하거나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방안을 검토,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자전거이용자에게는 비용을 감면 (예를 들어 주민등록등본을 떼는 경우 그 비용을 자전거이용자에게는 무료로 제공하는 방안)

### 1.2 대중교통과 연계된 자전거보관대(주차장) 설치(접근성·이동성)

여성친화성  
필수

- 도입배경
  - 자전거 이용자를 위해서는 단거리 통행뿐 아니라 레저여행, 출퇴근을 위해서 대중교통과 연계하는 자전거 주차시설이 확보되어야 하며, 주요 교통연계환승지점, 주거생활권, 주요 업무지역 역사에 여성우선 자전거 주차면을 포함한 자전거 보관시설을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
- 목표
  - 주요 연계환승 역, 주거생활권, 주요 업무지역의 지하철 역사, 버스정류장에 여성을 배려한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 증진
- 규정
  - 주요 교통환승역, 교통광장 등에 일정수준 이상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하고 대중교통 탑승이 편리한 위치에 여성보관대의 일정비율 확보
    - 유료 자전거 보관소 요금을 대중교통 이용시 무료 또는 할인 등 제도적 지원
    - 레저용 철도, 버스, 지하철 등에 자전거 탑승간 일정수준 이상 도입
    - 안내표지, 지도 등 비치로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 제고

## 2.1 방법 및 경보시설 설치(안전)

여성친화성  
필수

- 도입배경
  - 자전거 보관대(주차장)의 안전성은 자전거의 훼손 및 도난을 방지함과 여성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 즉, 자전거 주요 부품의 도난과 자전거 차체의 파손이나 도난을 방지하고, 여성 자전거이용자들이 처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위험발생 가능성을 예방하고자 함
- 목표
  - 자전거보관소(주차장)의 설치위치가 너무 외지거나 부적절하지 않은지를 검토하고, 보관소 내에 CCTV를 설치하여 자전거 차체의 훼손과 도난을 방지하고, 여성 자전거이용자들이 처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을 확보
- 규정
  - 자전거보관소(주차장)의 설치는 주변상황을 고려하여 너무 외지지 않은 곳을 선택
  - 자전거보관소 내 CCTV의 설치는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설치
  - 위험상황 발생 시 경찰서와 연계된 비상벨 설치
  - 방범설비는 바닥면으로부터 170cm의 높이에 있는 사물을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
  - 폐쇄회로 카메라와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가 일치하여야 함
  -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 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함
  - 선명한 화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

## 2.2 조명 및 밝기(안전)

여성친화성  
선택

- 도입배경
  - 현재 설치되어 있는 보관대(주차장)의 경우 대부분 지하철역 고가 하부공간이나 고가차로의 하부공간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경우가 많음. 이러한 곳은 그 자체로도 여성들이 접근하기 쉽지 않은 곳으로 여성을 상대로 하는 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곳임
  - 따라서 이러한 곳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충분한 조명과 조도를 확보하여 범죄 유발요인을 제거하여야 할 것임
- 목표
  - 자전거 보관대는 자전거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설 중 하나로 여성 자전거 이용자의 충분한 시야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명환경이 필수적이며 채광 또한 충분히 확보되어야 할 것임
- 규정
  -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보관대(주차장)에는 바닥으로부터 85cm 높이 지점에서 평균 70lux 이상 조도를 유지함
  - 노상에 설치되는 자전거보관대(주차장)의 경우에는 야간에 방범 및 안전을 위해 보안등을 설치하고 적정 조도를 유지하여야 함
  - 여성 전용 주차면에는 일반 주차면보다 더 밝게(2배 이상) 조도를 확보하여야 함
  - 저전력조명/자연채광 등을 활용한 방법과 에너지 절감효과 등 함께 고려

## 2.3 위험 상황 시 대응 안내표지(안전)

여성친화성  
필수

### ■ 도입배경

- 자전거 보관대(주차장) 이용 시 예측하기 어려운 돌방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에 대한 행동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당황하기 쉬움
- 따라서 자전거 보관대에서 위험 상황발생시 행동요령에 대한 세부지침 안내표지를 통해 알려주고 비상연락처, 비상벨 위치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 목표

- 돌발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요령을 인지시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돌발상황 시 침착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

### ■ 규정

- 보관대(주차장) 출입구 및 여성우선 주차면 앞에 위험 상황 시 대응 안내표지판을 여성운전자의 눈높이에 맞게 설치하여 쉽게 보고 숙지할 수 있도록 함.
- 비상벨의 위치 안내표지판을 동선을 따라 설치하고 비상벨의 설치는 여성우선 주차면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150cm높이로 설치하여 여성이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2.4 (건물식)투명벽면 확보 및 시야확보(개방감)(안전)

여성친화성  
필수

### ■ 도입배경

- 자전거보관대(주차장) 설치 시 외부공간에서 주차장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일정 부분 투명벽면을 확보하여 위험요인의 제거가 필요함. 또한 투명벽면확보는 자연채광을 통해 쾌적한 공간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함

### ■ 목표

- 자전거보관대(주차장) 내·외부에서 시각적 시야를 확보하여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범의뢰인을 미연에 방지하여 여성 자전거운전자의 안전 향상

### ■ 규정

- 출입구 전면 및 측면에 투명 벽면을 설치하여 주차장 내·외부에서 시야 충분히 확보.
- 지하식 및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경우 기둥식 주고를 권장하며 구조체에 의한 시야 침해를 최소화



3.1 여성우선 보관면 설치(건물식, 일렬식 20m이상,  
복층식)(편리)

여성친화성  
권 고

- 도입배경
  - 일반적으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 근력이 약해 자전거주차 시 면적이 좁거나 복층형 주차시 상층에는 주차하기가 어려움
  - 따라서, 복층식인 경우 하단부(계획대수 10%이상)와 일렬식 주차방식으로 연속성이 길어 이용에 불편이 예상되는 보관대(주차장)에 한해 여성공간을 배려하여 편리성을 제공함
- 목표
  - 여성 자전거이용자가 쉽고 편리하게 자전거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주차방식 제공
- 규정
  - 복층 거치대인 경우 하단에 여성 지정 주차면 설치
  - 거치대의 높낮이를 다르게 하여 주차된 자전거간 거리를 유지하여 주차 후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거치대간 간격은 30cm이상이 되도록 함
    - 일렬식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하여 목적 출입구로부터 20m이상 거리가 이격되도록 연속성이 있는 경우 출입구로부터 인접한 지점에 여성 지정 주차면 설치

3.2 이용방법에 대한 안내표지(편리)

여성친화성  
권 고

- 도입배경
  - 자전거 거치대 등 주차시설을 처음 이용하는 경우, 그 사용방법에 대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따라서 처음 이용하는 자전거이용자들도 쉽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주차방법을 상세히 기술한 안내표지판의 설치가 요구됨
- 목표
  - 다양한 자전거 주차시설 도입 시 처음 이용하는 초보자를 위해 자전거보관대(주차장) 이용 방법을 상세하게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규정
  - 보관대(주차장) 내 주차시설을 이용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쉽게 설명하여 안내표지판을 설치
  - 이용 안내판의 시인성, 명료성 및 주변경관과의 조화 여부
  - 비상벨, 비상전화 사용안내판 등과 연계 설치
  - 정기 유지보수 및 청결 유지를 통한 활용성 유지

### 3.3 보행 및 자전거진출입 통로 확보(편리)

여성친화성  
권 고

- 도입배경
  - 자전거 주차를 위해서는 거치대간 간격도 중요하지만 주차를 하기 위해 거치대 사이의 자전거 이동반경이 확보되어야 함. 자전거주차가 완료된 이후에 자전거가 너무 많이 주차될 경우 최소 자전거 이동반경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여 사람의 통행 및 자전거의 이동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되고 있음
- 목표
  - 자전거 주차면간 최소 이동반경을 확보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위험 상황 발생 시 탈출 통로를 확보하고자 함
- 규정
  - 주차면간 통로는 최소한 1.5m 이상이 확보되도록 설치
    - 주차면과 주출입 통로 간 색상을 구분하여 설치함으로써 시각적으로 구분을 명확히 하도록 함
    - 주통로 상에 불법적인 적치물이나 방치물은 존재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도록 함

### 3.4 공기주입기 설치(편리)

여성친화성  
권 고

- 도입배경
  - 자전거 이용 시 타이어의 바람은 수시로 빠질 수 있으며 특히, 장시간 주차 후 이러한 현상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주차장별, 일정 주차면별 공기주입기를 설치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함
- 목표
  - 자전거 이용 시 공기압조절 또는 자전거 고장을 대비한 다양한 시설을 자전거보관대(주차장)에 비치하여 보관소가 단순한 보관이 아닌 자전거를 위한 다양한 기능의 센터 역할을 하도록 함
- 규정
  - 자전거 수요에 맞게 적절한 개소수의 공기주입기 설치
  - 공기 주입기는 쉽게 눈에 띄는 위치에 설치하고, 색상 또한 눈에 쉽게 발견될 수 있는 색상으로 도색하여야 함
  - 공기 주입 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자전거 경정비 시설, 상비약 등 응급시설 등과 연계 공간을 효율적으로 배치

4.1 보관대(주차장) 내·외부 쓰레기 및 적치물 관리(쾌적)

여성친화성  
필수

- 도입배경
  - 자전거 보관대 내·외부에 쓰레기가 적치되어 있다면 누구보다 먼저 여성이용자의 이용이 줄어들 것임. 특히, 여름인 경우 미관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악취가 유발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환경이 유지 될 경우 범죄장소로도 이용될 수 있을 것임
- 목표
  - 자전거 보관대(주차장)의 내·외부를 항상 청결한 상태로 유지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을 활성화시키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
- 규정
  - 보관대(주차장) 관리인을 지정하고 점검카드를 만들어 2회/일 관리하도록 함.
    - 점검사항 : 청결, 공기주입기 작동 여부, 자전거 주차통로 확보 유무, CCTV작동 유무, 비상벨 작동 유무, 노후장기주차 자전거 등
  - 유료 보관대(주차장) 운영 시 회원제 등을 통해 주차장 청결과 함께 자전거 정기 점검 및 보수 등 서비스와도 연계
  - 주차 자전거의 보수, 청소 등 적극적인 서비스의 제공
  - 지자체, 시설관리공단 등 담당기관 및 실질적 관리담당자 지정

4.2 날씨 변화에 안전한 눈·비 가림막 설치(쾌적)

여성친화성  
권고

- 도입배경
  - 자전거의 경우 비나 눈 등 기후변화에 노출될 경우 녹이 슬고 자전거의 손상을 가속화시켜 자전거이용자에게 불편함을 제공함은 물론, 노상에 가림막이 설치되지 않고 자전거가 흩어져 주차된 경우 방치자전거처럼 보여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음
- 목표
  - 눈, 비 등 기후 변화에 자전거를 보호하고, 가림막내에 자전거를 주차함으로써 정돈된 도시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음
- 규정
  - 일정규모 높이에 자전거 전체를 보호할 수 있는 가림막 설치
  - 가림막의 형태는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어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여성 지정 주차면의 가림막은 여성 지정 주차면임을 고려하여 타 주차면과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을 선정하도록 함
  - 과도한 가림막으로 인한 범죄 우려 및 미관에 대한 고려 병행
  - 가림막 외 다양한 자전거 보호방안에 대한 연구 및 노력 필요

## 참고자료 및 관련법규

- 손문금 · 여명희, 2009, '자전거이용자 정책만족도 및 요구도조사', **생활권자전거친화타운조  
성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이신해, 2004, **서울시 단거리 승용차 통행감축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통계청, 2005, 인구 · 주택총조사
- 통계청, 2004,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 2009, 자전거교통사고 발생건수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법률
- 서울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 도로교통법
-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2009-정책개발-40

**여성친화적 자전거이용시설 체크리스트**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보관대(주차장)를 중심으로-

**발행인** 박현경

**연구자** 손문금 · 신혜숙

**발행일** 2009년 12월

**발행처**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주 소**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한숲길 22번지

**전 화** 02. 810. 5101(代)

[www.seoulwomen.or.kr](http://www.seoulwomen.or.kr)

이 책의 저작권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인쇄처 : 경성문화사 02 786 2999